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관별로 관리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의 평가·개선 권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22.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상청장”을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를 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5년”을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로 한다.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5까지 및 제85조를 각각 제84조의5부터 제84조의7까지 및 제83조의3으로 한다.

제84조의5(중전의 제83조의3)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을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6(중전의 제83조의4)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을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공제”로, “보험등이어야”를 “보험 또는 공제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가입의무자””를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을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보험등에”를 “보험 또는 공제에”로 한다.

제84조의7(중전의 제83조의5)의 제목 “(보험등의 가입 관리)”를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76조제4항”을 각각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를 “(보험·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6조제5항”을 “법 제76조제2항”으로,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을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로 한다.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폐업,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본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사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 등을 해제·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평가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하 “분석·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분석·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4항의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2.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정보
3. 가입대상 확인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가입대상별 보험 현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과 이용기간
3.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와 내용
4. 공동이용 또는 제공된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③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요청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3조의3(중전의 제85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2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4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업무

2.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업무
3. 제2호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의 분석과 안정적 유지관리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4. 제83조의8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경우 이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 조치와 제공 업무
5. 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납과 관리

제88조의2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76조제4항”을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보험등”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을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한다.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 제102호를 제10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03호(중전의 제102호) 전단 중 “제101호까지”를 “제102호까지”로 한다.

102. 남서울경전철

별표 3의 제목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3 관련)”을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6 관련)”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 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 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 원) ①-----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 청장, 산림청장, <u>기상청장</u> 및 해양경찰청장	3. ----- ----- <u>질병관리청</u> <u>장, 기상청장</u> -----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u> <u>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행정안</u> <u>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u> <u>른 사전협의와 법 제10조의3에</u> <u>따라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u> <u>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u> <u>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u> <u>록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을</u> <u>구축·운영할 수 있다.</u>
<u>제10조의3</u> (생 략)	<u>제10조의4</u> (현행 제10조의3과 같 음)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삭제

④ (생략)

<신설>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

-----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 제1항제5호-----

-----.

1.·2. (현행과 같음)

② -----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

③ (생략)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4(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2. (생략)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

-----.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
공제-----

--- 보험 또는 공제이어야 ---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5제2항-- 보험 또는 공제-----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의무자”-----.

1. ~ 3. (현행과 같음)

③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보험 또는 공제

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83조의5(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84조(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 ·

----- 보험 또는 공제에 ---
----.

1. · 2. (현행과 같음)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의 관리) ① -- 법 제76조의5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6조의5제4항-----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보험 · 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
-- 법 제76조제2항-----

----- 보험회사, 공제회 등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 허가·인가·등록·신

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폐업,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본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사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 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

<신 설>

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험사업자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 등을 해제·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평가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하 “분석·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분석·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획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4항의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 현황
2.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정보
3. 가입대상 확인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가입대상별 보험 현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사용 목적과 이용기간

3. 요청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범위와 내용

4. 공동이용 또는 제공된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관리방안

③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요청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제83조의3(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4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업무

2.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업무

3. 제2호에 따라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의 분석과 안정적 유지관리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4. 제83조의8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또는 제공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경우 이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 조치와 제공 업무 5. 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의무 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납과 관리 ⑤ ----- 제2항 또는 제4항----- ----- -----. ⑥ ----- 제2항 또는 제4항----- ----- ----- -----.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신설>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행정
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
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76조의5제4항-----
-- 보험 또는 공제---

②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
2항, 법 제76조의5제4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